

국토교통성 고시 제1593호

여행업법(1952년 법률 제239호) 제12조의 3, 표준여행업약관(1995년 12월 19일 운수성 고시 제790호)의 전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기에 공시한다.

2004년 12월 16일

국토교통 대신 기다가와 가즈오

최종 개정: 2018년 3월 29일 관광청 고시 제9호(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

표준 여행업 약관

【원문은 종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部)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라고 함)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서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部)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동시에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

행계약을 말합니다.

- 4 이 부(部)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고 함)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연결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여행 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고 함)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맡아 합니다.

(수배 대행자)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 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체,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제5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요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 시작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이라고 함)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제1항의 신청요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4 모집형 기획여행에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처합니다.
- 5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전화 등에 의한 예약)

제6조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요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요금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의 순위는 당해 예약의 접수 순위에 따릅니다.

3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 (2) 응모 여행자수가 모집 예정 인원수에 이르렀을 경우
-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경우
-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7)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8)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

제8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통지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해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에서 정하는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 수배하여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해서 열거한 후 당해 계약서면을 교부한 다음, 여행 시작 전날(여행 시작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당해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 안으로 이러한 확정상황들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 2 전항의 경우에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때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하여 여정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당해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2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 안으로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여행 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당해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당해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고 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의 금액 변경)

제14조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 받을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 운임·요금”이라고 함)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모집형 기획여행의 모집시에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 운임·요금에 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5일째 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 3 당사는 제1항에 정하는 적용 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때는 동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여행에 드는 비용(당해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에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포함함)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함)에는 당해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이용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 후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는 전항에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크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급 받습니다.

2 여행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단에 열거한 것, 기타 중요한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당해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 시작 전의 해제)

제1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참가 여행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단체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저행사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 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을 우려가 극히 클 경우.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클 경우.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9) 여행자가 제1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해 기일의 다음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여행 시작 날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국내여행의 경우는 13일째(당일여행은 3일째)가 되는 날보다 이전에, 해

외여행의 경우는 23일째(별표 제1에 규정하는 성수기에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33일째)가 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 여행 시작 후의 해제)

제18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 시작 이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그 밖의 사유로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배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3) 여행자가 제1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제19조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 66F8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당해 통지를 행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수배)

제20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 시작 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당해 여행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맡아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함)를 정해서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고 함)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단체·그룹에 대한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는 당해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 관리

(여정 관리)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수배할 것.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 여행 일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 여행서비스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4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 여행 종료시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행안내원 등의 업무)

제25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을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의 업무 기타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되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 조치)

제26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여행자는 당해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7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 대행자”라고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한 명 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8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대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당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 보증)

제29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단에 드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의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을 제외함)을 제외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동포 하단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사유에 따른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당해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로 합니다. 또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함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해 변경에 따른 변경 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0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당해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영업보증금 (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보증금)

제31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명칭
- (2) 소재지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일 경우)

(변제업무보증금)

제31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도쿄도 ○○구 ○○마치 ○○초메 ○○번 ○○호)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 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a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는 10일째)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b부터 e까지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부터 e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에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d 여행 시작일 당일에 해제할 경우(e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e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 일본 출국시 또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의 여행 계약을 제외함)	
a 여행 시작일이 성수기의 여행인 경우로서,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4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b부터 d까지의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1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d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a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9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b부터 d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80% 이내
d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일본 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 시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 보상금(제29조 제1항 관련)

변경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한 건 당 비율(%)	
	여행 시작 전	여행 시작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함) 그 밖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 출발지인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간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9) 앞의 각 호의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 시작 전”이란 당해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시작 후”란 당해 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함		

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의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 설비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1박에 대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의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비싼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의 변경이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 중에서 여러 건 발생한 경우라도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 당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호에 따릅니다.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部)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라고 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수주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여행만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部)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회원과 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당해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4 이 부(部)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고 함)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 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숙박 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고 함)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맡아 합니다.

(수배 대행자)

제4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 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체,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그 밖의 보조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기획서면의 교부)

제5조 당사는 당사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는,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요청 내용에 따라 작성한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에 관한 기획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기획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기획서면에서, 여행대금의 내역으로서 기획에 관한 취급 요금(이하 “기획요금”이라고 함)의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신청)

제6조 전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 내용에 관하여, 당사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요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 내용에 관하여,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회원번호 기타의 사항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요금은 여행대금(그 내역으로서 금액이 명시된 기획요금을 포함함)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수주형 기획여행에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 신청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처합니다.

5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여행자가 소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경우

(3)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 경우

(4)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

제8조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6조 제1항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 계약에서 전자승낙 통지를 발할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에서 정하는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전항의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3 당사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하여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여행 계획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해서 열거한 후 당해 계약서면을 교부한 다음, 여행 시작 전날(여행 시작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당해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 안으로 이러한 확정상황들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때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하여 여정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당해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기획서면,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당해 여행자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 안으로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

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 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고 함)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 2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당해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당해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의 금액 변경)

제14조 수주형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해 적용 받을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라고 함)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수주형 기획여행의 기획서면 교부시에 명시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5일째 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 3 당사는 제1항에 정하는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때는 동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여행에 드는 비용(당해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에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포함함)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함)에는 당해 계약내용의 변경시에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했을 경우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이용 인원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 후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는 전항에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당해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크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급 받습니다.

- 2 여행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단에 열거한 것, 기타 중요한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극히 클 경우.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당해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 시작 전의 해제)

제1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 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단체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4)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 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을 우려가 극히 클 경우.

(5)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클 경우.

(6)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7) 여행자가 제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해 기일의 다음날에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여행 시작 후의 해제)

제18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 시작 이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그 밖의 사유로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배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여행자가 제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제19조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

을 때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당해 통지를 행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28조 또는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수배)

제20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 시작 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당해 여행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맡아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함)를 정해서 신청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고 함)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단체·그룹에 대한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6조 제1항의 업무는 당해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3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

이 신청요금을 지급 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요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며,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24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주형 기획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서비스를 수배할 것.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 여행 일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 여행서비스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5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 여행 종료시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행안내원 등의 업무)

제26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을 동행시켜 제24조 각 호의 업무 기타 당해 수주형 기획여행에 부수되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조치)

제27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여행자는 당해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8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

시킨 자(이하 “수배 대행자”라고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한 명 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 제29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대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당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의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수주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 보증)

제30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단에 드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의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을 제외함)을 제외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동표 하단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사유에 따른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f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당해 변경된 부분 및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당해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수주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 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수주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함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해 변경에 따른 변경 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1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당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당해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영업보증금 (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보증금)

제32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2) 소재지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일 경우)

(변제업무 보증금)

제32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도쿄도 ○○구 ○○마치 ○○초메 ○○번 ○○호)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 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 다음 항 이외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a b부터 f까지의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는 10일째)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부터 f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부터 f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이내
d 여행 시작일 전날에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e 여행 시작일 당일에 해제할 경우(f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f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 일본 출국시 또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의 여행계약을 제외함)	
a b부터 d까지의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d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a b부터 e까지의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9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부터 e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 및 e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d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e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80% 이내
e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일본 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 시작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 보상금(제30조 제1항 관련)

변경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한 사건 당 비율(%)	
	여행 시작 전	여행 시작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함) 그 밖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 출발지인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간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주1) “여행 시작 전”이란 당해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시작 후”란 당해 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의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 설비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1박에 대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의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비싼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의 변경이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 중에서 여러 건 발생한 경우라도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 당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별지

특별보상 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당사의 지급 책임)

제1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함)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장에서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 보상금, 후유장해 보상금,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함)을 지급합니다.

2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예상치 않게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기는 중독증상을 제외함)을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을 가지고 당사가 미리 수배한 승차권류 등에 의해 제공되는 당해 기획여행 일정에 정하는 첫 번째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운송·숙박 기관 등의 마지막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여행의 일정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보고했었을 경우에는 이탈시부터 복귀 예정시까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보고, 또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 또는 복귀 예정 없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 이탈시부터 복귀시까지 또는 그 이탈했을 때부터 이후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당해 기획여행 일정에 여행자가 당사가 수배한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일체 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간에 따름)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취지 및 당해 일에 발생한 사고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했을 때는 당해 일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전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수행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실시할 경우는 그 접수 완료시
- (2) 전항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숙박 기관 등이,
 - a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의 수하물 검사 등 완료시
 - b 선박인 경우에는 승선 수속 완료시
 - c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승차시
 - d 차량인 경우에는 승차시

e 숙박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입장시

f 숙박 기관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 수속 종료시로 합니다.

4 제2항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수행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릴 경우는 그 통지시

(2) 전호의 해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운송·숙박 기관 등이,

a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퇴장시

b 선박인 경우에는 하선시

c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하차시

d 차량인 경우에는 하차시

e 숙박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퇴장시

f 숙박 기관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퇴장시로 합니다.

제 2 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첫 번째)

제 3 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의 고의. 단, 그 사람이 사망 보상금의 일부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으로 정해진 운전 자격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이에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 단, 당사가 보상해야 할 상해를 치료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또는 수감 중에 생긴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 탈취, 내란, 무장 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이 규정에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현저히 평온이 침해되어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

(10)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함. 이하 동일) 혹은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함)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들에 의한 사고.

(11) 전 2 호의 사유에 수반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2 당사는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경부증후군(소위 “편타성손상”) 또는 요통으로 타각 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두 번째)

제4조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전호의 사유에 수반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세 번째)

제5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상해에 대해서는 각 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각 호의 행위가 당해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일정 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 동종 행위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제1에서 정한 운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모두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함)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상에서 이 행위들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 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항공기(정기편 혹은 부정기편의 여하 불문) 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제5조의 2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사망 보상금의 일부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것.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액

(사망 보상금의 지급)

제6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자 한 명당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기획여행일 경우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한 기획여행일 경우에는 1500만엔(이하 “보상금액”이라고 함)을 사망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해 여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의 지급)

- 제7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신체에 남겨진 장애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서, 그 원인이 된 상해가 나은 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자 한 명당 보상금액에 별표 제2의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여행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어서도 여전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당사는 사고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별표 제2의 각 호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또한 별표 제2의 각 호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단, 별표 제2의 (1)c, (1)d, (2)c, (4)d 및 (5)b의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3항을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단, 별표 제2의 7, 8 및 9에 규정한 상지(팔 및 손) 또는 하지(다리 및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 사지 당 후유장해 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 5 전 각항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 보상금액은 여행자 한 명 당 한 기획여행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 위로금의 지급)

제8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입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들어가 상시 의사의 관리 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했을 경우에는 그 일수(이하 “입원 일수”라고 함)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입원 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40만엔
 - b 입원 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 c 입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 d 입원 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4만엔
-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입원 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 b 입원 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 c 입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 d 입원 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표 제3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는 그 상태로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입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입원 위로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거듭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통원 위로금의 지급)

제9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소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동시에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방문 진료를 포함함)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했을 경우에 그 일수(이하 “통원 일수”라고 함)가 3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당해 일수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통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통원 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 b 통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 c 통원 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2)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a 통원 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 b 통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5천엔
- c 통원 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만엔

2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 착용한 결과,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소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했을 때는 그 상태로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통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소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해가 치료되었을 때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통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통원 위로금과 후유장애 보상금을 거듭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

제10조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 일수 및 통원 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위로금 중 금액이 더 큰 것(동액일 경우에는 제1호에 언급한 것)만을 지급합니다.

- (1) 당해 입원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입원 위로금
- (2) 당해 통원 일수(당사가 입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중의 것을 제외함)에 당해 입원 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 일수로 간주하여 당해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통원 위로금 (사망의 추정)

제11조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후 또는 조난된 후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제12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 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가 심각해졌을 때는, 그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제4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 등의 청구 절차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의 청구)

제13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에게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여행자의 신체의 진료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이러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당사가 관여 및 인지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당해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그 설명 혹은 보고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알렸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의 청구)

제14조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호적등본,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 b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 증명서
- c 여행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 b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 증명서

c 후유장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입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a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 증명서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통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a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 증명서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항의 제출 서류의 일부 생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을 받아야 할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위)

제15조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했을 경우라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관해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당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 손해 보상

(당사의 지급 책임)

제16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소지품(이하 “보상대상품”이라고 함)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이라고 함)을 지급합니다.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첫 번째)

제1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단,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처치로서 행해졌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단, 여행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제외합니다.
- (8) 보상대상품의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가 먹음 등.
- (9) 단순한 외관의 손상으로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 다른 보상대상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1) 보상대상품을 잊고 두고 옴 또는 분실
- (12) 제 3 조 제 1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일 경우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 (2) 전항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두 번째)

제17조의 2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것.
-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4) 법인인 경우,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5) 기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제18조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소지품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것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현금, 수표 기타의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2)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3)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함)
- (4) 선박(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를 포함함) 및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것들의 부속품
- (5) 산악등반용구, 탐험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6) 의치, 의족 및 의수, 콘택트렌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동물 및 식물

(8) 기타 당사가 사전에 지정한 물건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급액)

제19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의 금액(이하 “손해액”이라고 함)은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 및 시점의 보상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수선비용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의 합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상대상품의 한 개 또는 한 쌍에 대한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할 때는 당사는 그것의 손해액을 10만엔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여행 당 15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단, 손해액이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1회의 사고 당 3000엔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방지 등)

제20조 여행자는 보상대상품과 관련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1호를 위반했을 때는 방지 및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동항 제2호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 동항 제3호를 위반했을 때는 취득해야 할 권리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했다고 인정하는 것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손해보상금의 청구)

제21조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신할 제3자의 사고 증명서

(2) 보상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2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서류

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제3자에게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임)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제22조 제16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당사는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위)

제23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금액 한도 내에서 당사로 이전됩니다.

별표 제1(제5조 제1호 관련)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 2(제7조 제 1 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눈의 장애	
a 양쪽 눈이 실명되었을 때.	100%
b 한 쪽 눈이 실명되었을 때.	60%
c 한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가 되었을 때.	5%
d 한 쪽 눈이 시야 협착(정상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가 되었을 경우를 말함)이 되었을 때.	5%
(2) 귀의 장애	
a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b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c 한 쪽 귀의 청력이 50센티미터 이상에서는 통상적인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때.	5%
(3) 코의 장애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20%
(4) 저작(咀嚼), 언어 장애	
a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b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35%
c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장애를 남겼을 때.	15%
d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겼을 때.	5%
(5) 외모(안면·두부·경부를 말함)의 추태	
a 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겼을 때.	15%
b 외모에 추태(안면의 경우 직경 2cm의 반흔, 길이 3cm의 선상흔 정도를 말함)를 남겼을 때.	3%
(6) 척추의 장애	
a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를 남겼을 때.	40%
b 척추에 운동장애를 남겼을 때.	30%
c 척추에 기형을 남겼을 때.	15%
(7) 팔(손관절 이상을 말함), 다리(발관절 이상을 말함)의 장애	
a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었을 때.	60%

b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또는 3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c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d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겼을 때.	5%
(8) 손가락의 장애	
a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20%
b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15%
c 엄지 손가락 외의 한 손가락을 제2 손가락 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8%
d 엄지 손가락 외의 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5%
(9) 발가락의 장애	
a 한 발의 제1 발가락을 발가락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10%
b 한 발의 제1 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8%
c 제1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2 발가락절간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5%
d 제1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3%
(10) 기타 신체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평생 자신의 일을 자신이 못하게 되었을 때.	100%
주)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중 “이상(以上)”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3 (제8조 제2항 관련)

- (1)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가 되어 있음.
 - (2)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을 잃었음.
 - (3) 양쪽 귀의 청력을 잃었음.
 - (4) 양쪽 상지의 손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의 기능을 잃었음.
 - (5) 한쪽 하지의 기능을 잃었음
 - (6)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음.
 -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음.
 - (8) 기타 상기 부위의 합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음.
- (주) 제4호의 규정 중 “이상”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수배여행계약의 부(部)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맺었을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으로 여행자를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을 함으로써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고 함)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말하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이란,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 운임, 숙박료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변경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를 제외함)를 말합니다.

4 이 부(部)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동시에 여행대금 등을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5 이 부(部)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고 함)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연결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수배 채무의 종료)

제3조 당사가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서비스를 수배한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당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사가 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이하 “취급수수료”라 함)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

이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수배 대행자)

제4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 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제5조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요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요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요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6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경우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

제7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 1 항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를 통지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해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8조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약 체결의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항의 서면에서 밝힙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제9조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상환으로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

제10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함)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해서 승차권류, 숙박권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당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했을 경우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당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계약내용의 변경)

제12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의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로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한 수배를 취소할 때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취소료, 위약금 기타 수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변경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수배여행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제13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된 취소료, 위약금 기타의 운송·숙

박기관 등에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제14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3) 여행자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때.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된 취소료, 위약금 기타의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제15조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여행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졌을 때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 3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장 여행대금

(여행대금)

제16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여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 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확정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 3 당사는 여행 시작 전에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대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당해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 서명 없이 당해 비용 등을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단,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대금의 정산)

제17조 당사는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 중 여행자 부담이 될 요금 및 취급 요금(이하 “정산여행대금”이라고 함)과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행 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대금을 정산합니다.

- 2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단체·그룹 수배)

제18조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함)를 정해서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19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라고 함)의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단체·그룹에 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는 당해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인원 수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0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요금을 지급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요금을 지급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당해 서면을 교부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성자의 변경)

제21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로부터 구성자의 변경 제안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2 전항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당해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수행 서비스)

제22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단체·그룹에 수행안내원을 동행시켜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행안내원이 실시하는 수행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 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3 수행안내원이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4 당사가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약 책임자는 당사에 소정의 수행 서비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3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 대행자”라고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했을 때에 한하여 여행자 한 명 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로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24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당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당해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7장 영업보증금 (여행업협회의 보증 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보증금)

제25조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명칭
- (2) 소재지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 사원일 경우)

(변제업무보증금)

제25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도쿄도 ○○구 ○○마치 ○○초메 ○○번 ○○호)의 보증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항(渡航)수속대행계약의 부(部)

(적용 범위)

-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 제2조 당사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다른 여행업자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당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정의)

- 제3조 이 약관에서 “도항수속대행계약”이란, 당사가 도항수속의 대행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도항수속대행요금”이라고 함)을 수령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의 업무(이하 “대행 업무”라고 함)를 행하는 것을 말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의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 서류의 작성
- (3) 기타 전 각 호에 관련되는 업무

(계약의 성립)

- 제4조 당사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전 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도항수속대행계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 경우
 - (2)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3)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 5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당해 도항수속대행계약에 의해 맡아 하

는 대행 업무(이하 “수탁 업무”라고 함)의 내용, 도항수속대행요금의 액수, 그 수령 방법, 당사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6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전항의 서면 교부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7 전항의 경우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비밀준수의무)

제5조 당사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자의 의무)

제6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탁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그 밖의 것(이하 “도항수속서류 등”이라고 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당사가 수탁 업무 수행시 일본의 관공서, 재일외국공관 그 밖의 자에게 수수료, 사증료, 위탁료 기타의 요금(이하 “사증료 등”이라고 함)을 지급해야 할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당해 사증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4 수탁 업무 수행시 우송비, 교통비 기타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당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제7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도항수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
 - (2)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도항수속서류 등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 (3) 여행자가 도항수속대행요금, 사증료 등 또는 전조 제4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 (3) 여행자가 제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때.
 - (4) 제3조 제1호의 대행 업무를 맡아 했을 경우에, 여행자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여권, 사증 또는 재입국 허가(이하 “여권 등”이라고 함)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
-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도항수속대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는 이미 지급한 사증료 등 및 전조 제4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이미 행한 수탁 업무에 관한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

제8조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 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 2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을 통해 실제로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및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상담계약의 부(部)

(적용 범위)

-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여행 상담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행상담계약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여행상담계약”이란, 당사가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상담 요금”이라고 함)을 수령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 (2) 여행 계획의 작성
- (3)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 (4) 여행지 및 운송·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5)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 제공

(계약의 성립)

제3조 당사와 여행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전 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상담계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여행상담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상담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여행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 경우
-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5)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담 요금)

제4조 당사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 소정의 상담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제5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3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여행상담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책임)

제6조 당사는 여행상담계약의 이행 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개월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 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수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